



한/경/관/리/질/의/응/답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해당 여부

Q 당사에서 현재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로 설치 신고 되어 있는 초음파세척시설 1기를 교체 예정중에 있습니다. 기존 초음파세척시설의 경우 메틸렌클로라이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후 4기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초음파세척시설 중 규모 6.13㎡ 1기를 탄화수소계 세척제(이소파라핀계)인 상품명 GS POWER CLEAN(CAS NO 64742-48-9)을 세척제로 사용하는 규모 0.7㎡의 초음파세척시설로 교체 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명기하신 상품명 GS POWER CLEAN (CAS NO 64742-48-9)이 환경부고시 제2001-36호의 37종 물질중 일부가 포함된 혼합물이라면 그 물질을 포함 업소 전체 사용하는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 이상일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악취흡착탑용 입상활성탄 교체시기

Q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취흡착탑에 입상활성탄 교체시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관련업계에서는 벤젠흡착력이 10~20%이하가 나오면 교체주기로 판단하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믿고 하면 되는지 따로 입상활성탄 교체를 위한 판단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활성탄의 벤젠흡착력은 제품의 규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인자로 알고 있으나 교체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흡착탑의 교체시기는 충전재 및 흡착하고자 하는 물질의 종류, 충전층의 높이 및 직경, 물질전달계수, 흡착탑 입출구의 농도, 운전조건(흡착탑 내부의 온도, 압력), 흡착등온선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 조건에 따라 그 교체시기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흡착법의 원리에 대해

여는 화학공학 및 환경공학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바, 흡착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흡착탑을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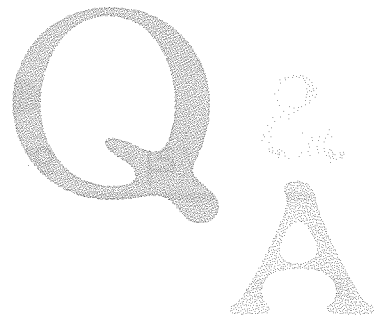
Q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오염물질과 배출시설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별표1에 의한 오염물질은 발생되는데 별표8에 의한 배출시설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령, 탄화수소가 발생하는 석유정제시설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와 아울러 배출시설은 해당되는데 발생오염물질의 기준치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규정에 의거 탄화수소는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에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치가 없는 경우는 오염물질 발생이 없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있을 경우는 기타시설로서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독물관리법

Q 당사는 유독물(MEK,톨루엔 등 5종)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이러한 물질은 위험물에도 해당이 됩니다. 유독물 관리자가 따로 있으나, 교육/점검 등은 정기적으로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따로 유독물에 대해 교육/점검 및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유독물 표지등도 부착해야하는지요? 즉, 모든 유독물 관리를 위험물 법에 따라 하면 되는지요? 만약, 유독물관리법에 일부를 따라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따라야하는지요? 해당 법조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독물영업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제29조에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 표시는 보관,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독물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유해물질일 경우 유독물영업자의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관련 문의

Q 각 종 기계설비 수선유지 업무상 발생된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연간 15톤 정도 발생합니다.), 당사는 수선에 필요한 자재를 지급하며, 수선유지 업무에 대해 유지 보수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수선유지 과정에서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당사가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증명확인 및 관리 책임은 당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도급(원청, 하청 포함)받은 자가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변경신고항목에 대한 질의

Q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조 변경신고사항에 보면 “사업장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변경사항에 사업장 대표자 변경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인허가시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대관점검시 수질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변경신고에 해당하니 조치하라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A 제 생각으로는 대표자 변경시마다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잘 못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대기법에서와 같이 이 조항이 수질환경보전법에서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필)증상에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번호”로 허가(신고)받은 사업장은 별도로 대표자를 실명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대표자를 실명으로 하여 허가(신고)받은 사업장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이옥신 측정주기

Q 사업장 일반폐기물소각시설(1.5ton/hr)입니다. 2004년 12월에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 기준초과 되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고 2005년 5월에 재측정하여 기준이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할 군청담당자께서는 다음주기가 2006년 5월까지 측정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다이옥신 의무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6년 5월까지 측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04년 측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2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후 2005. 5월 재측정한 것은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2005년의 측정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각시설 용량 변경시 신설시설로 적용 받는지 여부

Q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일반소각)체로서 2001. 1. 1. 이전에 1.5톤/시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다가 2톤/시 이상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변경허가를 득하고 2005년 초에 가동 개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기준이 신설시설 기준이 되는지 기존시설



한/경/관/리/질/의/응/답

기준이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A 다이옥신 배출기준에 적용받는 신설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일(시간당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신설시설은 2004. 7. 20일) 이후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 합니다.

수질 허가

Q 폐염산을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로 분리하여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폐염산을 폐수처리장에서 자가처리에 수질 허가증 상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 아님 폐기를 처리계획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호 규정에 의거 폐산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허가증에 명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시 처리방법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로 기재하면 됩니다.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Q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정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제출시 상기 등록증을 첨부(사본)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하며, 상기 방지시설업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방지시설업 등록증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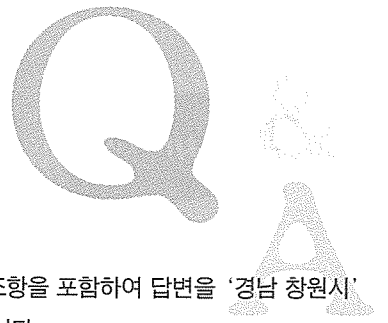
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방지시설)을 제작할 수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증없이 방지시설을 제작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계·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설계·시공할 경우 같은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시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설계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지시설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절삭유 성분이 포함된 수분의 처리방법

Q 당 회사 공정 중 수용성 절삭유를 취급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 특성상 작업시 절삭유가 작업장 바닥에 튀게 되고 수 회 물걸래질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걸래 청소시 발생하는 수분이 오수인지 아니면 폐수로 봐야 하는지? 오수로 분류시 사내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로 분류시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내용을 변경신고(내용추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A 작업장 바닥 청소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함유한 원료·부원료·첨가제 또는 제품 등이 혼입된 청소수는 “폐수”로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하여 방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료·부원료·첨가제 또는 제품 등이 유출되어 청소수에 함유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독물 관리인 선임

Q 동일한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전남,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각 사업장 별 유독물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조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이러한 경우, 법적인 신고/변경/보고 등을 각각 담당하는 관공서에 사업장 마다 각각 해야 하는지요?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만 유독물관리인을 선임하고, 다른 사업장을 원거리로 관리해도 될 경우, 법적 신고/변경/보고는 하나로 취합하여 하면 되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5조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별로 임명해야 되며, 영업등록신청도 경기도, 전남도 해당지역에 별도로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연간영업실적보고도 사업장별로 따로 하여야 합니다.

부생연료유 2호(c9+) 사용

Q 창원시에 부생연료유 1호(하이신), 보일러등유 등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c9+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부생연료유2호(c9+)를 산업체, 목욕탕, 빌딩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c9+을 사용하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법조항을 가르쳐 주십시오).

질의 3. 2항이 맞다면 허가없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법조항을 포함하여 답변을 '경남 창원시'를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A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해 경남 창원시 소재의 빌딩 및 공동주택 등은 청정연료 또는 경유(보일러 등유, 부생연료유 1호 포함) 사용 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부생연료유 2호(C9+)는 사용할 수 없으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대상 시설이 아닌 산업체에서는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부생연료유 2호(C9+)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 계상 가능여부

Q 당 현장은 2003년 12월 철도청과 T/K방식으로 계약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발주청은 철도청이었으나 2004년 1월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치법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시공사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도 도급반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의 자치법규에 의거 시공사가 추가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 자비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A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비용계상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사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